

○ 중앙대회 ('85. 7. 12) ○

제안

## 공단지역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집단보건관리제도(안)

### 1. 집단보건관리의 필요성

○ 산업의 고도성장과 함께 화학·유해물질의 제조·사용이 급증됨에 따라 '80년대 들어와서는 직업병 발생율이 년평균 20% 이상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은 전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직업병 발생의 증가현상은 산업의 다양화, 사업주 및 근로자의 보건의식 결여에도 문제가 있지만 제도적으로 볼 때 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인력부족, 사업주 경비부담, 지도감독 행정의 한계 등 현실적 여건으로 운영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질병예방사업은 오랜 경험의 축적과 고도의 기술 및 시설을 요하는 분야로서

오늘날 전문인력의 절대부족과 시설의 미비 여건하에서 사업주 책임하에 실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인 바 이로 인해 근로자 건강 관리가 형식적 행위에 그치는 경향이 많음.

○ 더욱기 직업병은 예방이 가능한 직업성 만성질환으로서 제조 및 가공 중소업체가 작업환경상 유해요인이 많아 내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출산업진흥 및 공업의 적절한 지방분산으로 중소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공단지역이야말로 집단적 발생의 잠재적 요소가 많은 곳으로 판단됨.

○ 따라서 공익성을 떤 산업보건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단내 사업장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단보건관리토록 함으로써 적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공동활용하는 한편, 책임을 지고 직업병 예방을 위한 상시적인 건강관리와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재해예방지향적인 제도가 절대시됨.

### 2. 현행법상 근로자 보건관리 내용 및 문제점

사업주의무사항	내용	문제점	근거조항
일반건강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시 실시</li> <li>○ 근로자 년 1회 실시</li> <li>○ 사무직 2년 1회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으나</li> </ul>	산업안전보건법 32조

사업주의무사항	내 용	문 제 점	근거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기관이 아닌 일반병·의원과 계약, 낮은 수가로서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어</li> <li>○ 부실검진을 초래, 실질적인 근로자 건강증진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li> </ul>	
특수건강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년 1회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2차 정밀검사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되므로</li> <li>○ 기업주들이 경제적 부담 및 사업장 환경 취약점 노출을 꺼려 검진대상을 줄이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많음.</li> <li>○ 또한 검진결과 직업병 유소견자에게는 본인에게 통고 적절한 치료책을 강구토록 하여야 함에도 은폐하는 경우 다발</li> </ul>	법 32 조
작업환경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음·분진·유기용제·유해물질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비롯한 제조·가공업체는 년 2회 작업환경측정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환경을 측정, 개선 함으로써 근원적 직업병 유발요인을 제거케 됨에도 불구하고, 자체 유해환경노출 기피 및 측정비용부담, 인식부족으로 기피</li> </ul>	법 31 조
보건 관계 자 선 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전담 보건관리자(의사)를 두어 보건관리업무외의 다른 업무를 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li> <li>○ 1,000명 미만 사업장은 촉탁 보건관리자(의사)를 선임, 근로자 50인당 월 1시간 이상 보건관리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li> <li>○ 50인 이상 1,000명 미만은 업종 및 종업원수에 따라 보건 담당자(간호원, 위생사, 간호보조원) 1~2명을 두어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명 이상 사업장은 규정대로 전담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나 의사들의 기피로 인한 인력확보의 어려움과 기업주의 인건비 부담에 따른 기피 등으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li> <li>○ 50인 이상 1,000명 미만 사업장은 재정적 부담으로 촉탁보건관리자 및 보건담당자를 형식적으로 선임 실제로 보건관리 업무를 하지 않고 있어 근로자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활동이 전무한 상태임.</li> </ul>	법 14 조 시행령 13 조, 16 조

사업주의무사항	내 용	문 제 점	근조사항
보건 교육	○ 근로자 채용시	○ 산업재해의 요인을 분석해 볼 때 교육적 원인이 67.5%임을 감안 할 때 보건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보건관계자 선임 및 기업주의 인식결여로 책임있는 교육이 전무한 실정임.	법 23 조

### 3. 문제개선 방향

○ 재해다발 및 잠재적 요소가 많은 사업장이 제조 및 가공 중소기업체로 지적되고 있으며

○ 제조, 가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노동인력을 재 창출하는 모성기능의 여성과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며

○ 직업병은 예방이 가능한 특성을 고려할 때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의 철저한 검진과 측정 및 교육 등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 따라서 사업장 밀집 지역인 공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집단 보건 관리체계 함으로써

— 전문적이고 상식적인 보건관리를 통한 유해환경 실태파악과 직업성질환 및 건강장해예방

— 사업장별 보건관리에 따른 보건전문인력 확보난 해소 및 기업주부담 경감

— 수시교육을 통한 사업주 및 근로자 재해예방의식 제고 등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사전예방 체계를 확립하여 근로자 건강증진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토록 시책이 강화되어야 함.

### 4. 집단보건관리제도 시행

#### 가. 제도의 개요

○ 현재 사업장별 보건관리를 공단지역에 한하여 전문보건기관으로 하여금 집단관리토록 대행지정 (보건관리체계 일원화 및 책임제)

○ 전문기관이 상시 지속적으로 공단내 전사업장 보건관리 (종합적인 보건관리 개선지도)

#### ○ 공단내 보건센타 설치 운영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 전국 25개 공단 (근로자총수 약 42만명)
보건센타 설치	○ 상시 근로자 30,000 이상 공단 (한국, 반월, 구미, 창원, 성남)에 설치 (신설) ○ 30,000명 미만 공단은 관할 시·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보건 센타에서 대행관리 (기존활용)
비용부담	현행 사업주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보건관리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실비 산정하여 근로자 1인당 600원으로 인두정액제로 비용수납 운영
보건관리 사업	○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연 2회) 및 평가 ○ 근로자 보건교육 ○ 근로자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li> <li>○ 작업 방법의 위생학적 개선</li> <li>○ 작업장내의 산업위생 시설 점검, 개선 및 설계에 관한 지도</li> <li>○ 방역 사업 및 근로자 보건상담</li> <li>○ 기타 근로자의 보건에 관한 사항</li> </ul>

#### 나. 관리운영체계

##### (1) 기본방침

○ 1개 보건센타 관리능력 및 운영을 감안, 상시 근로자 30,000명 이상 공단에는 보건센타 신설 독립운영

○ 기타 군소공단은 지역내 기존 보건센타에서 관리

○ 센타의 원활한 운영과 보건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단 관리책임자, 노동부지방사무소장, 기업주대표, 보건센타소장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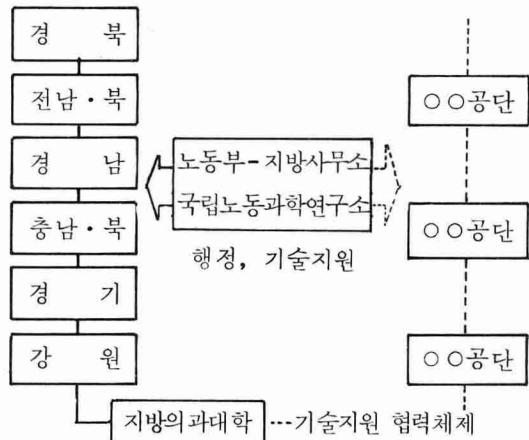
○ 보건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지역 의과대학 및 국립노동과학연구소와 협력체제

##### (2) 관리체계

- 특수건강진단기술협의회
  - 보건진단협의회
  - 진폐심사 위원회
  - 건강관리 위원회
  - 환경위생 위원회
- 대한산업 비영리법인  
보건협회 ('64.7. 설립)

(기존조직)

(신설)



#### 라. 기대효과

근로자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검진제 확립으로 건강장해예방 및 보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 관리자 (의사) 확보난 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건강문제를 전문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기업주와 근로자 공히 생산활동에 만전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 환경개선에 따른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 법상 사업주 의무사항인 제반 보건 관리를 종합 관리함으로써 비용절감 (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 상담을 통한 건강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역 사업으로 전염병 예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과 가정의 조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건강증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따른 생산 향상</li> </ul>

#### 5. 검토의견

○ 집단보건관리제도는 '72.4 정부재정 및 행정지원에 의거 마산수출자유지역내 보건센타를 설치 시범 운영하였던 바 집단보건관리체제가 개별 사업장별 보건관리체제보다 효

율성이 현 저함이 인정되어 동지역 입주업체 ( 79개 사업장 33,000명 )들의 계속적인 요청으로 현재까지 시범형 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당시 상공부에서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요청한 바 있음.

○ 뿐만 아니라 제 9차 ('79.9.22) 및 제 10차 ('82.9.5) 아세아 산업보건협회와 국제산업보건협회 총회시 한국의 집단보건관리체제가 소개되어 국제적으로 정평, 인정받아 유수한 국가에서 연구대상이 되어 제도 시찰한 바 있으며 시범기관으로서 국제적 기술 교류 대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전국에 확산,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사업장 단독보건관리	집 단 보 건 관 리
의    사	<input type="radio"/> 인력 확보 곤란 <input type="radio"/> 별도 고용 (인건비 부담)	센타의사 활용
일반검진	불가능 (별도 경비 소요)	자체 가능 (별도 경비 불필요)
특수검진	불가능 (전문기관의 외 별도 경비 소요)	" (" ")
환경측정	불가능 ("")	" ("")
추적검사	" ("")	" ("")
검진내용	형식적인 실시 기능 으로 부실검진 요소 내포	연간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책임 검진으로 근로자 건강 실질보호
비용부담	비용부담가중 * (별첨) 사업장인원 규모별 연간소요 경비 추산내역 참조	비용부담경감, 단독보 건관리 대비 약 30% 절감 소요경비 추산액 대비 표 참조

사업장 인원규모별 보건관리비 연간 소요  
비용 추산액 대비표

인 원 규 모	사업장 단독보건관리	집 단 보 건 관 리	절 감 비 (%)
100명 기준	1,085,000원  전강진단 $4,000 \times 100\text{명}$ $= 400,000\text{원}$ 정밀 검사 $7,000 \times 10\text{명}$ $= 70,000\text{원}$ 작업 환경 측정 $135,000 \times 1 / 2 \times 2\text{회}$ $= 135,000\text{원}$ 보건 관리비 $20,000 \times 2\text{시간} \times 12\text{월}$ $= 480,000\text{원}$	720,000원  $600 \times 100\text{명} \times 12\text{월}$ $= 720,000\text{원}$	33.7
200명 기준	2,170,000원  전강진단 $4,000 \times 200\text{명}$ $= 800,000\text{원}$ 정밀 검사 $7,000 \times 20\text{명}$ $= 140,000\text{원}$ 작업 환경 측정 $135,000 \times 2\text{회}$ $= 270,000\text{원}$ 보건 관리비 $20,000 \times 4\text{시간} \times 12\text{월}$ $= 2,170,000\text{원}$	1,440,000원  $600 \times 200\text{명} \times 12\text{월}$ $= 1,440,000\text{원}$	33.7
300명 기준	3,120,000원  전강진단 $4,000 \times 300\text{명}$ $= 1,200,000\text{원}$ 정밀 검사 $7,000 \times 30\text{명}$ $= 210,000\text{원}$ 작업 환경 측정 $135,000 \times 2\text{회}$ $= 270,000\text{원}$	2,160,000원  $600 \times 300\text{명} \times 12\text{월}$ $= 2,160,000\text{원}$	30.8

인원 규모	사업장 단독보건관리	집단보건 관리	절감 비(%)
	보건관리비 20,000 × 6시간 × 12월 = 1,410,000원		
500명	5,020,000원	3,600,000원	29.3
기준	건강진단 4,000 × 500명 = 2,000,000원 정밀검사 7,000 × 50명 = 350,000원 작업환경측정 135,000 × 2회 = 270,000원 보건관리비 20,000 × 10시간 × 12월	600 × 500명 × 12월 3,600,000원	

인원 규모	사업장 단독보건관리	집단보건 관리	절감 비(%)
	= 2,400,000원		
1,000명	34,970,000 원	7,200,000 원	79.4
기준	건강진단 4,000 × 1,000명 = 4,000,000원 정밀검사 7,000 × 100명 = 700,000원 작업환경측정 135,000 × 2회 = 270,000원 보건관리자(의사) 인건비 2,500,000원 × 12월 = 30,000,000원	600 × 1,000명 × 12월 = 7,200,000원	

## 상식코너

### — 불쾌지수 ( Discomfort index )

요즈음같이 무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이면 사람들은 짜증스러움이 더하여 인체가 느끼는 불쾌감을 흔히 불쾌지수가 얼마나 하는 말로 표현한다.

불쾌지수는 1950년이래 미국에서 기후의 변화에 따라 회사나 공장에서 전력소모를 알기 위하여 사용되던 것이다. 불쾌지수는 기류 및 복사열 등이 고려되지 않

은 습도와 온도의 영향에 의하여 인체가 느끼는 불쾌감을 숫자로 표시한 것으로 다음식에 의하여 얻어진다.

$$\text{불쾌지수} = \langle \text{건구온도}^{\circ}\text{C} + \text{습구온도}^{\circ}\text{C} \rangle \times 0.72 + 40.6$$

위 식에 의하여 얻어진 불쾌지수의 숫자가 70이면 10%정도의 사람이 불쾌하게 느끼고, 75에서는 50%의 사람이, 80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며 86 이상은 견디기 곤란한 상태에 이른다.